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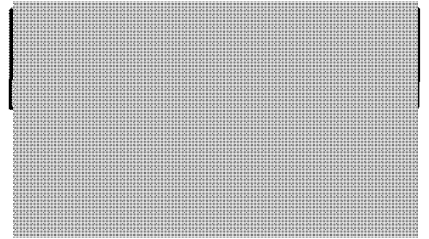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3-26

서울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 결



사 건 2001나2571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Redacted]

2. [Redacted]

3.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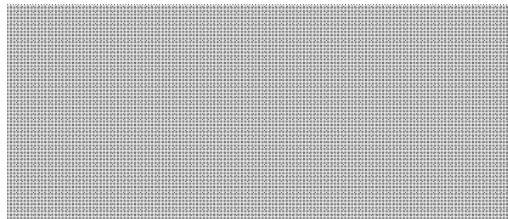
4. [Redacted]

5. [Redacted]

[Redacted]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01. 11. 1.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1. 3. 21. 선고 2000가단1465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 , [] , [] , []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 , [] , [] , [] 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에게 금 5,000,000원, 원고 [] , [] 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 , [] 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



증의 1, 제4호증의 1, 4,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0,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 대한 각 사실 조취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휠체어를 사용하여야만 이동이 가능한 중증 신체장애인들로서,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되었다(원고 [redacted] 지체장애 2급 2호, 원고 [redacted] 지체장애 1급, 원고 [redacted] 지체장애 1급, 원고 [redacted] 지체장애 1급 1호, 원고 [redacted] 지체장애 1급 1호).

나. 원고들은 위 선거 당시 국회의원 선거권자로서, 각 해당 투표소 및 그 위치는 별 지목록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선거에 있어 ① 장애인의 출입을 위한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의 2층 또는 3층, 계단이나 턱이 있는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였고, ② 각 투표소에 장애인의 출입을 위한 편의시설 내지 설비를 임시로 설치하거나 안내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③ 신체장애로 인하여 거소투표의 절차를 밟기 어려운 원고들에게 그 안내 및 신청절차에 조력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거나 그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참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별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피고의 선거권 보장 의무



가. 헌법 및 법령의 관련규정

(1) 헌법의 규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제24조).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제15조 제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 국내거주자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제4호).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성명·주소·거소·성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위 제3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신체장애자는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부재자신고서의 해당란에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제38조 제3항).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와 공회당 중에서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제147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투표구 안의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당해 투표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투표구 안의 다른 장소 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제147조 제1항 단서).

(3) 장애인복지법의 규정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3조).

나. 피고의 선거권 보장 의무와 그 범위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지극히 중요한 기본권 이므로 피고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피고의 선거권 보장 의무는 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장애인 복지법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과 같은 중증의 신체장애인 들 중 선거권을 행사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투표자나 선거관계인의 호의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거나 적어도 안내요원 등을 배치할 의무로 구체화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안내요원을 배치하였을 경우 안내요원이 투표시간 내내 투표소의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안내요원에게 장애인의 도착을 알릴 수



있는 호출신호기 등을 설치하고 호출을 받은 안내요원이 즉시 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 정확한 의사가 공정하게 투표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주권의 원리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투표의 편의성 보장이라는 이념은 선거관리의 공정이라는 이념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거소투표제도는 통상의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 순회투표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투표행위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담보할 방법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써 이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선거관리의 공정이라는 이념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될 것임은 명백하며, 또한 거소투표의 요건 및 절차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그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중증장애인들이라고 할 지라도 그들이 거소투표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예상하기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홍보 또는 안내의 범위를 넘어 원고들과 같은 등록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거소투표의 요건 및 절차를 개별적으로 고지하거나 그 신청절차에 협조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서승연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4, 제11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3, 7,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 해당투표소인 경기 광주군 도척면 제1투표소는 도척면 복지회관 2층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투표소에는 1층 출입을 위한 장애인용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장애인을 위한 안내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위 선거 당일 위 원고와 투표소에 동행한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은 투표소에 먼저 올라가 투표소가 2층에 설치된 문제로 선거구위원 등 관계자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 투표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위 원고의 장애 정도, 투표포기 경위, 피고의 의무위반의 태양,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금 5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원고는 위 선거일 아침에 해당투표소인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제1투표소(소외 2중학교 1층) 입구에 도착하였는바, 그 투표소는 1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던 중 마음을 바꾸어 다시 투표소로 돌아가 5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겨우 다른 투표자들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올라가서 투표를 마치고, 선거구위원 등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구위원 등 관계자들로부터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올라왔느냐는 모멸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투표를 마친 이상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함이 상당한 정신적인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 [redacted]은, 위 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하기 위하여 동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투표일 15일 전에 통·반장 등의 확인서와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절차 때문에 거소투표를 포기하였고, 해당투표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제1투표소가 삼성1동사무소 3층에 설치되어 혼자 힘으로는 투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② 원고 [redacted], [redacted]는, 피고로부터 거소투표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어떠한 안내나 조력도 받지 못하였고, 해당투표소인 서울 강동구 천호2동 제4투표소(원고 [redacted]), 서울 은평구 증산동 제4투표소(원고 [redacted])는 각 1층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곳에는 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아무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안내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로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에게 등록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거소투표의 요건 및 절차를 개별적으로 고지하거나 그 절차에 협조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을 제1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선거 이전인 2000. 3. 관보 및 중앙일간지, 지역지 등을 통하여 부재자신고 대상, 신고기간 및 방법, 부재자신고서 배부처 등을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1, 4의 각 기재, 원심의 원고 [redacted]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투표를 하지 아니한 원인이 해당투표소의 위치 및 편의시설의 미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선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0. 6. 15.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3.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 [], []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2. 6.

재판장	판사	심상철
	판사	최건호
	판사	전대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3-26

투표소설치현황

원 고	투 표 소	위 치
	경기 광주군 고척면 제1투표소	도척면 복지회관 2층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제1투표소	중학교 1층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제1투표소	삼성1동사무소 3층
	서울 강동구 천호2동 제4투표소	21세기탁구장 1층
	서울 은평구 증산동 제4투표소	양천구 노인정 1층